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915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915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가단57348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김학웅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박인철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0. 22. 선고 2019가단57348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E의 2/1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체결된 2018. 2. 25.자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126,006,03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원고에게, 피고 A은 63,003,020원, 피고 B, C, D는 각 21,001,0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E의 2/11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A과 소외 E 사이에 체결된 2018. 2. 25.자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7,490,5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 A은 원고에게 7,490,5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부 대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의 형식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확장한 청구취지와 피고들이 강조한 주장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9행의 “2018. 8. 16.”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쪽 20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5쪽 3행의 “된다”까지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인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위 법리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18. 2. 9. L조합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금채무의 원금 525,000원을 연체하였고, 2018. 3. 20. M카드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의 원금 1,318,000원을 연체한 점, ② 소외 회사는 2018년 10월경 현재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전 시점인 4~12개월 전 말일 기준으로 총 14건, 합계 73,214,014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연체이력이 있었던 점, ③ 또한 소외 회사는 2018. 8. 20.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합계 5,895,000원을 체납하고, 2019. 2. 22.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채무 4,140,000원을 연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당시 이미 자력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여러 차례 연체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공적 보험료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체가 이어지다가 2019년 4월경 G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9. 6. 28. 원고의 대위변제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제1심판결 6쪽 6행의 “소외 E이”를 “소외 E이 자신과 법인격이 동일한 소외 회사 앞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14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피고들 스스로 ‘망 H가 사망한 2018. 2. 25. 이후에 소외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6행의 “제9, 16호증”을 “제9호증”으로, 같은 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N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을 “당심 변론종결 무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4행, 16행의 각 “965,274,000원”을 “1,162,497,95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행의 “919,500,000원”을 “1,097,270,000원”으로, 같은 쪽 15행의 “45,774,000원”을 “65,227,950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17행의 “537,007,081원”을 “734,231,03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20행의 “(원 미만은 버림)”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쪽 3행의 “97,637,650원”을 “133,496,55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6행의 “93,007,602원”을 “126,006,038원”으로, 같은 쪽 7행의 “46,503,801원”을 “63,003,020원”으로, 같은 쪽 8행의 “15,501,267원”을 “21,001,006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12행, 13행의 각 “4,630,048원”을 “7,490,51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2행의 “피고들의”부터 같은 쪽 3행의 “인정할 수”까지 부분을 “소외 E의 피고들에 대한 특별수익 반환채무나 피고 B, C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정세진, 판사 김지영

[별지]

목 록

1. 경기도 양평군 대 3065㎡

- 이상 공유자 , , , -

-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관할 -

-

2. 경기도 양평군 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양평군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및 창고

111.47㎡ 주택

15.68㎡ 창고

- 이상 소유자 ,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관할 -

[별지]

계 산 내 역

1.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안분에 따른 부동산 가액(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가액	근저당권 실제피담보채무	근저당권 공동담보 안분에 따른 근저당권피담보채무	근저당권 공동담보 안분에 따른 부동산 가액 (㉔)
이 사건 제1부동산	1,097,270,000원(㉑)	428,266,919원(㉒)	404,236,792원 [5(=㉒)×(㉑/3)]	693,033,208원(=㉑-㉕)
이 사건 제2부동산	65,227,950원(㉒)		24,030,127원 [6(=㉒)×(㉒/3)]	41,197,823원(=㉒-㉖)
합계	1,162,497,950원(㉓)		428,266,919원(㉒)	734,231,031원(=㉓-㉔)

2. 소외 E의 상속지분(2/11)에 따른 부동산 가액(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부동산의 표시	근저당권 공동담보 안분에 따른 부동산 가액(㉔)	E 상속지분(2/11)에 따른 부동산 가액(㉕)
이 사건 제1부동산	693,033,208원(㉔)	126,006,038원(=㉔×2/11)
이 사건 제2부동산	41,197,823원(㉖)	7,490,513원(=㉖×2/11)
합계	734,231,031원	133,496,551원

3. 가액배상액(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가액배상액은 일의 자리에서 반올림)

부동산의 표시	E 상속지분(2/11)에 따른 부동산 가액(㉕)	현소유자 (등기상 공유지분)	피고별 가액배상액			
			A	B	C	D
이 사건 제1부동산	126,006,038원(㉕)	A(3/6) B(1/6) C(1/6) D(1/6)	63,003,020원 (=㉕×3/6)	21,001,006원 (=㉕×1/6)	21,001,006원 (=㉕×1/6)	21,001,006원 (=㉕×1/6)
이 사건 제2부동산	7,490,513원	A	7,490,513원	0원	0원	0원
합계	133,496,551원		70,493,533원	21,001,006원	21,001,006원	21,001,006원

